

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재지)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(이하 “방송통신대학교”라 한다)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로 하되,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.

제3조(교직원 등의 임명 등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·조교는 총장이 임명하고, 같은 항에 따른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법」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과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원·직원 및 조교의 정원은 「국립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 정원규정」 및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교원 확보기준 등)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(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)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.

1.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(이하 “단과대학”이라 한다)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
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(이하 “대학원”이라 한다) 학생정원

의 1.5배에 해당하는 수

3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

4.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

③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·학부별 조교 확보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제5조(학교규칙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 및 학부의 설치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2. 수업연한, 학기 및 수업일수
3. 입학, 재입학, 편입학, 휴학, 복학, 자퇴, 제적, 수료, 졸업 및 징계에 관한 사항
4. 학위의 종류 및 수여·취소에 관한 사항
5. 교육 과정의 운영, 교과목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
6.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
7. 등록 및 수강 신청에 관한 사항
8.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
9. 교원의 교수시간
10.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사항
11. 장학금 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 보조에 관한 사항
12. 수업료·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
13. 「고등교육법」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

요한 사항

14. 법 제13조에 따른 협력학교에 관한 사항

15. 그 밖에 법령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및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사전공고·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6조(부속시설 등) ① 방송통신대학교의 원활한 학사 운영과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(이하 “지역대학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1. 각 지역에 거주하는 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수업 출석, 시험 응시 및 학생 활동 지원 관련 업무

2. 지역 주민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 관련 업무

3. 지역 주민에 대한 방송통신대학교의 홍보 관련 업무

4. 그 밖에 방송통신대학교의 학사 운영 및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②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·제작·보급 및 송출 등을 수행하는 시설(이하 “디지털미디어센터”라 한다)을 둔다.

③ 지역대학 및 디지털미디어센터 등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·연구시설·부속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(이하 “부속시설등”이라 한다)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.

④ 부속시설등의 면적(별표 2에 따른 부속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)의 총합은 별표 3에 따른 학생 1명당 기준면적에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.

⑤ 각 부속시설등의 장은 관련 단과대학 또는 학과·학부의 장이 겸직하되,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속시설등의 조직, 운영 및 확보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7조(하부조직) ①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사무국을 두고,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(補)하며, 사무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.

② 법 제12조에 따라 방송통신대학교에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·실·본부·단 등의 하부조직을 두고, 각 하부조직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가 겸직하며, 그 분장사무는 학칙으로 정한다.

③ 법 제12조에 따라 부속시설등과 제1항에 따른 사무국 및 제2항에 따른 하부조직에 13개 이내의 과를 둔다. 이 경우 총장은 과의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각 과의 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사서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무대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⑤ 법 제12조에 따라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2개의 범위에서 행정실을 두고, 각 행정실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부조직의 구성과 운영에

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8조(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) ① 국민의 학습권 보장 및 고등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방송통신대학교에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

제9조(월정직책급 등) 법 제6조·제10조 및 이 영 제6조·제7조에 따라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부총장, 단과대학·대학원·학과·학부의 장, 부속시설등의 장 또는 하부조직의 장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교수·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·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폐지)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은 폐지한다.
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”을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②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6항 중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”을 “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[별표 1]

학과·학부별 조교 확보기준(제4조제3항 관련)

학과·학부 학생 수 확보기준	10,000명 미만	10,000명 이상 15,000명 미만	15,000명 이상 20,000명 미만	20,000명 이상
조교 인원	3	5	7	9

비고

- 위 표에서 “학과·학부 학생 수”란 학과·학부별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를 말한다.
- 위 표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과정이 설치된 학과·학부는 조교 1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.

[별표 2]

부속시설등의 구분(제6조제3항 관련)

구분	세부 내용
지원시설	강당, 서버·통신장비 관리실, 각종 시스템 운영실 및 그 부대시설
연구시설	연구용 실험실, 대학원 연구실, 부설 연구소 및 그 부대시설
부속시설	교직원의 주택, 종합실습교육장, 산학협력관, 학교기업의 시설 및 그 부대시설
교육기본시설	강의실·실험실습실·교수연구실·행정실·도서관·대학본부 및 그 부대시설
기타시설	지역대학 및 디지털미디어센터

[별표 3]

학생 1명당 기준면적(제6조제4항 관련)

계열별 구분	인문·사회	자연·교육
학생 1명당 기준면적(㎡)	1.5	2.5

[별표 4]

사무국장의 분장사무(제7조제1항 관련)

명칭	분 장 사 무
사무국장	보안, 관인 관리, 직원 인사, 급여, 문서 관리, 법무, 자체 감사,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, 회계 및 결산,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, 각종 공사 및 시설 관리,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관리, 비상기획, 그 밖에 총장이 정하는 사항